

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장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28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
발 의 자 : 문장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홍성룡·전석기·최웅식·

이병도·강대호·김정태·

이현찬·김평남·김화숙·

이영실·박순규·김제리 의원 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도시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람객 및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교통 혼잡,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해당 자치구의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.
- 따라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에 규정되어 있는 요금감면 조항에 도시공원이 위치한 자치구 주민에 대한 요금감면 조항을 추가하여,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자치구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등록표상 해당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요금 감면조항을 신설 함.(안 제20조제2항제4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주민등록표상 해당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	<p>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주민등록표상 해당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주민등록표상 해당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함 (세입감소)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

나. 추계결과

- 총비용 ≒ 199,890천원(연 평균 39,978천원)

(단위: 천원)

구 분	내용 및 조항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세입 감소	주민등록표상 해당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입장료 감면 (제20조제2항4호)	39,978	39,978	39,978	39,978	39,978	199,890

- 비용추계 전제

1) 해당 공원(서울식물원)은 19년 5월부터 유료입장을 하여 연간 데이터가 없으므로,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연간금액 계산

※ 경기도에 소재한 서울대공원은 비용추계에서 제외

2) 해당 자치구(강서구)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원 입장객 수 등 세부적인 통계가 없으므로 전체입장객을 서울시민이라 가정하고, 서울시민의 공원 입장률 및 1인당 공원 입장료를 활용하여 비용추계

※ 공원 입장률 =  $\text{공원 입장객 수} / \text{서울시 전체인구}(9,729,107\text{명}, '19\text{년 } 12\text{월말 기준})$

※ 1인당 공원 입장료 =  $\text{공원 입장료 수입 총계} / \text{공원 입장객 수}$

3) 입장료는 현재 금액으로 동결한다고 가정

4) 천원 미만 절삭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세입	소계(a)	△39,978	△39,978	△39,978	△39,978	△39,978	△199,890
	입장료 감소	△39,978	△39,978	△39,978	△39,978	△39,978	△199,890
세출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b-a)		39,978	39,978	39,978	39,978	39,978	199,890

- 입장료 연간 감면액 : 39,978,000원

· 추정식 : [해당 자치구 주민 수(591,796명) x 월평균 공원 입장률(0.45%)]  
x 1인당 월평균 입장료(4,170원)<sup>1)</sup> x 감면율(30%) x 12개월 =  
39,978,000원

서울식물원	입장료 수익(원)	입장객 수(명)	서울시민의 공원 입장률	해당 자치구 주민 수 (강서구, 19년 12월말 기준)
2019.5월~12월(A)	1,456,628,000	349,309	3.6%	591,796
월평균(A/8)	182,078,500	43,664	0.45%	591,796

주1) 1인당 월평균 입장료(4,170원) = 공원 입장료(182,078,500원) ÷ 입장자수(43,664명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분석관(주무관) 박인근

☎ 02-2180-7934

e-mail : yab0217@seoul.go.kr